2026 공공조달관리사 박문각 통합본 교재 추록(訂正·補充)

박문각 PMG · 김경배 교수 | 기준일 2026.06.30 |법개정사항 반영

※ 아래 1번은 교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정사항이고, 2번은 개별페이지별 수정사항입니다.
※ 시험일이 2026.6.11. 이후이므로 신법(있은 날 30일/안날 25일/재심 30일) 기준으로 통일합니다.
※ 정부 조직법개정(2026.1.2. 시행)으로 "기획재정부" → "재정경제부"로 변경되었습니다.

1. 공통수정항목(교재 전체 해당)

No.	수정전(교재 기재)	수정 후(정정)	수정 사유(근거 법령)
1	"기획재정부", "기획재정부장관", "기획재정부령", "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"	**"재정경제부",** **"재정경제부 장관",** **"재정경제부령",** **"재정경제부 계약제도과"**	정부조직법 개정(법률 제20895호, 2025.8.8. 공포, 2026.1.2. 시행) 시행령·시행규칙위임 표기 일괄 변경 해당 페이지: p.27 문제05 선지② 포함교재 전체
2	이의신청 기한: "안 날부터 15일 이내"	**이의신청 기한:** **"안 날부터 25일 이내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② 개정(2026.3.10. 공포, 2026.6.11. 시행) 해당 페이지: p.138, p.149, p.304, p.657, p.661, p.666 등
3	이의신청 기한: "있은 날부터 20일 이내"	**이의신청 기한:** **"있은 날부터 30일 이내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② 개정(2026.3.10. 공포, 2026.6.11. 시행) 해당 페이지: p.138, p.304 등
4	재심(조정) 청구 기간: "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"	**재심(조정) 청구기간:** **"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④ 개정(2026.3.10. 공포, 2026.6.11. 시행)
5	이의신청 심사기관: "기획재정부장관"	**이의신청 심사기관:** **"해당 중앙관서의 장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② 원문: "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" 해당 페이지: p.138, p.149, p.304, p.305 등
6	낙찰 하한률(적격 심사 낙찰 하한률): 87.745%, 87.995%, 88% 등	**낙찰 하한률 전 항목+2%P 상향:** **89.745%, 89.995%, 90% 등**	재정경제부 계약예규(적격 심사기준) 개정 (2026.1.30./5.29. 시행) — 해당 페이지: p.217, p.253 등
7	복수 예비가격작성: "±3% 범위", "2인이 각각 하나씩 선택"	**복수 예비가격작성:** **"±2% 범위", "4인이 각각 1개씩 선택"**	예정가격 작성 기준예규개정(2026.1.30. 시행) 해당 페이지: p.170, p.171 등
8	종합심사낙찰제 적용기준: "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" 적격심사 대상: "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(고시 금액 이상)"	**종합심사낙찰제 적용기준:** **"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"** **적격심사 대상:** **"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(고시 금액 이상)"**	시행령 제42조④ 제1호(2018.12.4. 개정): "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" 교재는 2016년 도입당시 기준(300억 원)을 기재한 오류 해당 페이지: p.118, p.217, p.252, p.254, p.389, p.514, p.522 등

2. 개별 수정항목(페이지별)

No.	페이지	수정전(교재 기재)	수정 후(정정)	수정 사유(근거 법령)
1	p.39	우대정책 표: "기술개발제품—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 우선구매"	**우대정책 표:** **"기술개발제품— 중소기업 물품** **구매액의 15% 이상 우선구매"**	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③(2020.2.18. 개정): "100분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" 교재 p.95 본문에는 15%로 정확히 기재됨
2	p.88	우수 조달 물품 유효기간: "3년(갱신 가능)"	**우수 조달 물품 지정 기간:** **"3년(최대 3년 연장 가능, 총 6년)"**	조달 사업법 시행령 제30조⑥: "지정 기간은 3년,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" "갱신"이 아닌"연장"이 법률용어
3	p.138	결정 기한: "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"	**심사기한:** **"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③: "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" 교재의"30일"은 재심 청구 기간(§28④)과 혼동한 오류
4	p.157	법조문 돋보기: "시행령 제33조(입찰공고)" 내용: 입찰공고 기간"10일 이상"	**법조문 돋보기:** **"시행령 제33조(입찰공고)" — 조항 번호 정확** **단, 입찰공고 기간은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** **일반 경쟁 7일 전/ 국제입찰 40일 전**	시행령 제33조= 공고 방법(전자조달시스템 이용) 시행령 제35조= 입찰공고의 시기(기간) "10일 이상"은 제35조① "7일 전"과 불일치
5	p.172	지체상금 상한: "계약보증금 상당액(계약금액의 10%) 초과 시 계약 해제 가능"	**계약 해제·해지 기준점:** **"계약보증금 상당액(10%)에 달한 때** **→계약 해제·해지 가능(시행령§75②)"** **법정 상한: 계약금액의 30% (시행령§74③)**	시행령 제74조③(2018.12.4. 신설): "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." 10%는 상한이 아닌 계약 해제·해지 기준점
6	p.179	문제16 해설: "시행령 제33 조에 따라 일반경쟁의 입찰공고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"	**문제16 해설:** **"시행령 제35 조에 따라 일반경쟁의** **입찰공고시기는 7일 전"**	시행령 제35조①(입찰공고의 시기): "입찰일 전 일부 터 기산 하여 7일 전" 제33조는 공고 방법 (전자조달 시스템)만 규정
7	p.213	Check Q&A: "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, 변경, 취소 불가"	**Check Q&A:** **"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** **제출된 입찰서는 교환, 변경, 취소 불가"**	시행령 제39조③: "제출한 입찰서를 교환·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." 제4 항은 별도 내용— 항 번호오류
8	p.279	지체상금 총액한도: "계약금액의 일정 한도(통상 30%)"	**지체상금 총액한도:** **"계약금액의 법정 상한 30%"**	시행령 제74조③: "통상"이 아닌 법정 상한 (2018.12.4. 신설, 강행규정)
9	p.304	이의신청 처리 절차: "발주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보"	**이의신청 처리 절차:** **"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접수 후** **15일 이내 심사 및 결과통지"**	국가계약법 제28조③: "받은 날부터 15일 이내" 교재의"10일"은 법적 근거 없는 오류

10	p.305	이의신청 관련 기간: "14일 이내"	**14일은 해당 없음→ 정정:** **·기관 심사·결과통지: 15일(§28③)** **·재심(조정) 청구: 30일(§28④, 2026.6.11.)**	국가계약법 제28조③④ —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15일(심사), 재심 30일이며, "14일"은 법에 없음
11	p.309	하자보수보증금 본문: "법정 한도 3~10%"	**하자보수보증금 법정 범위:** **"2~10%"(시행령§62①)**	시행령 제62조①: "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" 시행규칙 제72조① 공종별 요율: 2~5% (정확)
12	p.311	법조문 돋보기: "시행령 제70조(하자보수보증금)" "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"	**법조문 돋보기:** **"시행령 제62조(하자보수보증금)"** **"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"**	① 조항번호오류: 제70조→제62조 ②수치 오류: 5→10 (시행규칙§72 공종별 2~5%와 혼동) 시행령§62①: "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"
13	p.335	문제15 해설: "지체상금률은 물품의 경우 0.5/1,000(0.05%)"	**문제15 해설:** **"지체상금률은 물품의 제조·구매의 경우** **0.75/1,000(0.075%)"**	시행규칙 제75조(지체상금률): 물품 제조·구매= 0.75/1,000 0.5/1,000은 공사의 지체상금률
14	p.568 문제09	"시행령 제53 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"	**"시행령 제75조 및 제51조에 따라** **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"**	시행령 제75조(계약의 해제·해지) + 제51조(계약보증금) 제53 조는 현행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
15	p.568 문제11	"시행령 제52조①③에따라"	**"시행령 제75조②①에 따라"**	시행령 제75조②: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계약 해제·해지 또는 유지 규정
16	p.568 문제12	"시행령 제52조①①, 제53조"	**"시행령 제75조①, 제51조"**	시행령 제75조①: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계약 해제·해지 제51조: 계약보증금 납부 규정
17	p.624	위험 평가매트릭스 방법 1표: 열 헤더: "발생 가능성" (값: 미미함, 경미함, 보통, 중대함, 치명적) 행헤더: "영향력" (값: 매우희박, 낮음, 가능성있음, 가능성높음, 거의확실)	**리스크평가 매트릭스방법1 표:** **열헤더: "영향력(Impact)"** **(값: 미미함, 경미함, 보통, 중대함, 치명적)** **행헤더:** **"발생가능성(Probability)"** **(값: 매우희박, 낮음, 가능성있음, 가능성높음, 거의확실)**	표준 Probability-Impact Matrix: ·열(X축) = 영향력(미미~치명적) ·행(Y축) = 발생 가능성(희박~확실) 교재는 열·행 레이블이 서로 바뀌어 기재됨 (등급 값과 헤더 명 불일치)
18	p.649	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: "의무구매 비율: 총구매액의 1% 이상"	**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:** **"우선구매 촉진(법정 의무비율 없음,** **노력 의무)"**	사회적기업육성 법제12조: "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" (노력 의무) 법정의무 구매 비율 규정 없음 (2026 우선구매 지침 Q&A 확인)
19	p.649	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: "의무구매 비율: 총구매액의 1% 이상"	**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:** **"의무구매 비율: 총구매액의 1.1% 이상"**	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 (2024.2.법 개정, 2025.1.1. 시행) 1.0%→1.1%로 상향
20	p.657	이의신청 처리 기간:	**이의신청 처리 기간: "15일**	법제28조②③ — 처리 기간 15일(변경

		"30일 이내" 이의신청 제기 기간: "30일 이내"	**이내" (§28③)** **이의신청 제기 기간: "안날 25일 이내" (§28②)**	없음), 제기 기간 안날 25일(2026.6.11. 시행)
21	p.661 문제07	이의신청 기간 정답: "30일 이내"	**이의신청 기간 정답:** **"안날 25일 이내/ 있은 날 30일 이내"**	법제28조② 개정(2026.6.11. 시행): "안날 25일, 있은 말30일"
22	p.666	핵심 정리: "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전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"	**핵심 정리:** **"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** **25일 이내에 제기"**	법제28조② 개정(2026.6.11. 시행): "안 날부터 25일 이내"로 단축
23	p.673	관련 법령 표: 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-추정가격의 정의"	**관련 법령 표:** **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** **-추정가격의 산정"**	시행령 제7조 정확한 제목: "추정가격의 산정" ("정의"가 아님)
24	p.673	관련 법령 표: 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-사전규격공개제도"	**관련 법령 표:** **시행령 제18조= "2단계 경쟁 등의 입찰"** **(사전규격공개는 조달 사업법·나라장터 운영 규정)**	시행령 제18조(2단계 경쟁 등의 입찰): 사전규격공개제도와 전혀 다른 조항 조항번호와 내용 불일치— 명백한 오류

【유의 사항】

① 종합심사 낙찰제 금액 기준(공통 8번): 2016년 도입 당시 300억 원이었으나, 2018.12.4.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 원으로 하향. 교재 전체에서"300억 원"을"100억 원 "으로 정정.

✓ *해당 페이지: p.118, p.217, p.252, p.254, p.389, p.514, p.522 및 관련 OX 문제·해설 (p.222, p.260, p.265, p.267, p.373~p.406, p.518).*

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(개별 20번): 2024.2. 법 개정, 2025.1.1. 시행으로 1.0% → 1.1% 상향. 사회적기업은 법정 의무비율 없음(노력 의무).

③ 리스크 매트릭스(개별 18번): 표의 열·행 레이블이 서로 바뀌어있음. "미미함~치명적"은 영향력, "희박~확실"은 발생 가능성 등급.

④ 지체상금(10%·30%)과 하자보수보증금 표(2~5%)는 서로 다른 개념을 구분하면 되는 사항이고, 이의신청·하자보수보증금 본문은 수치 정정 사항입니다.

⑤ 정답이 바뀌는 문항: p.304 "안날 15일"→25일(있은 날 30일은 정답 유지), p.305 "14일"→15일·30일, p.309 본문"3~10%"→"2~10%".

⑥ 조문 표기: 정부조직법 개정(2026.1.2.)으로 위임 표기가"기획재정부령" → "재정경제부령"으로 변경(시행령 §62①, §74① 등).

⑦ 본 추록은 2026.6.27. 기준 최신법령(법률 제21065호, 시행령 제36318호,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)을 반영 하였습니다.

⑧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기간(p.88): "갱신"은 법률용어가 아님. 조달 사업법 시행령 제30조⑥ "3년의 범위에서 연장"이 정확한 표현입니다.

⑨ 입찰공고시기(p.157, p.179): 시행령 제33조는 "공고 방법"만 규정하고, 입찰공고"기간(시기)"은 제35 조에 규정됩니다.